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로:대1-1호선) 변경 결정 안

인천광역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로 : 대1-1호선) 변경 결정 안

의안 번호	100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11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대1-1호선은 72. 8월 최초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로 일부 부분 개설 (전체 3,417m중 1,965m) 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
- 나. 강화군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량 산정시 2033년 1일 교통량은 2,000대 미만으로 왕복 2차로 개설로도 도로용량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예측됨
- 다. 따라서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를 위해 현행 결정도로 폭원을 조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규정에 의거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

2. 주요 내용

가. 당 초

- 1) 대1-1호선 : L=3,417m, B=35m

나. 변 경

- 1) 대 1-1호선 : L= 240m, B=35m
- 2) 중2-631호선 : L=1,258m, B=18~25m
- 3) 중3-335호선 : L=1,500m, B=12m

3. 입안 내용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1	1	35	주간선 도로	3,417	갑곶리 339-2	신당리 638	일반도로		72. 8. 23.	
변경	대로	1	1	35	보조간선 도로	240	갑곶리 339-2	갑곶리 196-3	일반도로			
	중로	2	631	18~25	보조간선 도로	1,258	갑곶리 197-9	중2-4	일반도로			
	중로	3	335	12	보조간선 도로	1,500	중2-4	대산리 1205-1	일반도로			

4.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대로1-1호선	대로 1-1호선	○변경 - 연장 : 3,417m → 240m	○ 48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로 대로1-1호선의 기능 축소에 따른 도로 폭원 및 기개설 현황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
	중로 2- 631	○변경 - 연장 : 3,417m → 1,258m - 폭원 : 35m → 18m~25m	
	중로 3-335	○변경 - 연장 : 3,417m → 1,500m - 폭원 : 35m → 12m	

5. 주민 의견 및 청취 현황

가. 청취기간 : 2013. 9. 23. ~ 10. 6.(14일간)

나. 청취방법 : 일간신문 광고(경기일보,중부일보) 시보게재, 게시판 광고

다. 청취결과 : 의견 없음

6. 관계기관 의견(강화군)

- 시설결정된 이후 현재(20년이상)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구간의 도로폭을 35m 존치하여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.
- 부분 개설된 구간의 도로폭을 현행대로 변경하는 것과 미 개설된 부분의 도로폭을 완화(35m→18~25m)하는 것은 그간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것으로 시설변경은 타당
- 변경안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설 결정후 미개설 부분 조속개설 요망

첨부 : 위치도 1부

도시관리계획 결정도(당초) 1부

도시관리계획 결정도(변경) 1부.

위 치 도



